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223번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 중소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의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규정을 준용하며
- 관계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및 센터운영 실무에 맞는 용어정비 등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10조의2)
-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의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기준을 따름(안 제17조제1항)
- 관계법령명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정비 (안 제3조제2호)
- 센터운영 실무에 맞게 용어 등 정비
 - ‘창업지원’ 과 ‘비즈니스지원’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으로 정의(안 제3조, 제12조)
 - ‘수탁을 받은 자’ 를 ‘수탁자’ 로 용어정비(안 제7조)
 -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용어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8. 14. ~ 2019. 9. 4.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창업·비즈니스 지원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을 “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0조의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중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를 “따른 수탁자”로 한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으로 하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센터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 입주기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7조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의 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 기준을 따른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센터소장” 을 각각 “센터장”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비즈니스지원실” 을 “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센터소장” 을 “센터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산업진흥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산업진흥과 전 덕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과학기술지원팀장 권 명 화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은 영 (행정 296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p>3. "창업지원사업"이란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이용 및 시장성, 경영, 기술, 세무에 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4. "비즈니스지원사업"이란 창업지원실 졸업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화단계에 있는 유망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비·시설 등의 지원과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5. "입주자"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u>창업·비즈니스</u></p>	<p>제3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p> <p><삭 제></p> <p><삭 제></p> <p>5. ----- ----- -----센터에 입주하여</p>

지원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의 입주계약 만료 및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 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운영·관리규칙 위반 등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8. (생략)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창업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비즈니스지원실 입주신청 자격은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및 정보기술 기업으로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

6. “졸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0조의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 따른 수탁자-----.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제12조(입주대상 및 자격) <삭 제>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으로 하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③ (생략)

제13조(입주신청)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소장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서류(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사결정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 센터소장은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입주자는 매년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장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변경사항 통보)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주신청) ① -----

----- 센터장 -----
-----.

② 센터장

제14조(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① 센터장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
----- 센터장 -----
----- 센터장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변경사항 통보) ① -----

----- 센터장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센터장

제1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소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졸업) ① (생략)

②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2. (생략)

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창업·비즈니스지원실 주소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제1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7조에 따라 고시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의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기준을 따른다.

② -----

----- 센터장 -----
-----.

③ 센터장-----

-----.

제19조(졸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센터장 -----
-----.

제20조(퇴거) ① -----
----- 센터장 -----

-----.

1. 2. (현행과 같음)

3. -----
----- 센터 -----
